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헌혈 관련 공로자의 고궁·공원 등 이용료 감면 >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720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헌혈 관련 공로자의 고궁·공원 등 이용료 감면	2

I. 개요

1.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72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22.

(3) 회 부 일 : 2025. 1.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조사에 따르면,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지방자치단체·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비율이 82.7%로 가장 높았음.

이에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나. 검토의견

□ 현재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8 및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헌혈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헌혈자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음.

-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8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¹⁾을 바탕으로 헌혈자에 대해 훈장·포장 추천, 표창 수여, 기념행사, 공연 초청, 헌혈 유공자 명패 설치 등을 실시 중임.

- 각 지자체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8 및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헌혈 장려·지원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헌지 설정 및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 상품권·지역화폐·기념품 지급, 예방접종비용 지원, 보건소 진료비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지자체별 세부내용은 [참고 1]).

1) 「혈액관리법」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법 제4조의8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유공 행사
2.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3. 그 밖에 헌혈자 예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표 1] 헌혈자 예우 및 지원 사업

구분	근거	헌혈자 예우 및 지원 주요내용	비고
보건 복지부	「혈액관리법」 제4조의8,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	- 훈장 또는 포장 추천, 표창 수여 - 헌혈자의 날(6.14) 행사(기념식, 헌혈유공자 개인·단체 포상, 헌혈관련 홍보·참여공간 운영 등) - 공연(연극, 뮤지컬 등) 초청 - 헌혈 토크콘서트 개최 - 헌혈유공자 등 명패 설치	
지방 자치 단체	「혈액관리법」 제4조의8, 각 지자체 헌혈 장려·지원 관련 조례	※대상 및 지원의 세부내용은 지자체 간 상이 (지자체별 세부내용 [참고 1]) - <u>지자체 설치·운영 공공시설의 이용료·수 강료·주차요금 등 감면</u> - 상품권·지역화폐·기념품 지급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 - 보건소 진료비 면제 - 지자체장 표창 - 지자체 축제·행사 초청 - 헌혈에 대해 봉사활동 인정 - 지자체 공무원 헌혈시 공가 허가	각 지자체의 실정 및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실시 중

자료: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정부의 헌혈자 지원이 상훈, 기념행사, 명패, 헌혈 관련 홍보활동 등과 같이 헌혈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를 확산하고자 하는 예우적 측면에 중점이 있는 반면,

지자체의 지원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실질적 혜택의 성격이 보다 강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참고 1]을 보면 지자체 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다회 헌혈자에게 지원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1회 헌혈자 또는 연평균 헌혈횟수가 많지 않은 자에게도 상품권·지역화폐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수강료·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헌혈자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이 헌혈에 대해 긍정적 효능감을 가지는 데 영향을 주어 헌혈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각 지자체에서 헌혈자를 대상으로 상품권·지역화폐 지급이나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과 같이 실용적·실질적인 지원이 시행 중인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서 감면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점 역시 재정적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궁을 한 예로 살펴보면, 현재 고궁의 관람요금은 국민·외교사절단, 상이군경, 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만24세 이하(외국인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자, 효행우수자, 한복착용자, 다자녀부모, 임산부 등 다양한 대상에게 감면되고 있는데²⁾,

이와 같은 관람요금의 감면대상자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훈령) 및 개별 법률에 의해 계속하여 신설·추가되고 있음(감면대상자 주요 확대 내역 [표 2]).

- 고궁의 총 관람인원 중 무료 관람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 41%에서 2024년 63%로 최근 10년간 약 22%p 증가하였음(2015~2024년 고궁 유·무료 관람인원 현황 [표 3]).

2) 전체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 [참고 2]

[표 2] 고궁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주요 확대내역

감면대상자 신설·추가		감면액(감면율)	감면시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무료 (전액 감면)	2000. 1. 2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2002. 1.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2004. 1.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2009. 1. 30.
「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광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2010. 5. 1.
「효행 장려 및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2010. 5.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의상자 및 의상자 중 부상등급 1·2등급인 자의 동행 활동 보조자 1인,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자녀			2011. 8. 4.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2011.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2011. 10. 1.
연령 및 국적	만 18세 이하 국민, 만 65세 이상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영주자격(F-5) 취득자		2011. 10. 1.
	만 24세 이하 국민, 만 6세 이하 외국인		2013. 6. 4.
	만 65세 이상 외국인		2014. 9. 22.
	만 18세 이하 외국인		2023. 4.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2012. 8. 8.
한복을 착용한 자			2013. 10. 10.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2015. 7. 20.
군인	현역 군인(군복을 입은 자)		2015. 7. 20.
	전체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2020. 7. 22.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2019. 3. 29.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신부와 보호자 1인			2020. 7. 22.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2024. 4. 26.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반액(50% 감면)	2014. 9. 22.

자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훈령), 「(구) 궁·능원 및 유적관광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훈령) 및 고궁 관람료 감면에 관한 개별 법률의 연혁법령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 1. 국가유산청 소관 4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기준

2. 감면시기는 관람요금 감면 규정이 신설·추가된 개정일을 기준으로 작성

3.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감면대상자 용어 수정과 같이 감면대상의 근본적인 변경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예: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전승교육사로의 변경 등).

[표 3] 고궁 유·무료 관람인원 (2015~2024년)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유료 (A)	5,114,118	6,411,293	4,179,733	4,379,955	4,566,695	1,266,589	1,738,687	3,030,804	4,150,381	4,677,846
무료 (B)	3,616,572	3,873,785	4,814,069	4,216,088	5,853,029	1,644,130	2,096,409	5,019,230	7,252,508	8,043,502
계 (C= A+B)	8,730,690	10,285,078	8,993,802	8,596,043	10,419,724	2,910,719	3,835,096	8,050,034	11,402,889	12,721,348
무료 인원 비중 (B/C)	41.4%	37.7%	53.5%	49.0%	56.2%	56.5%	54.7%	62.4%	63.6%	63.2%

자료: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각 연도, 국가유산청)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 1. 국가유산청 소관 4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기준

2. 2020·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람인원 감소

□ 고궁 무료관람객의 증가는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양하고 문화 향유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부담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침³⁾.

□ 고궁의 입장료 수입은 수입대체경비로서 고궁 관람지원인력 운영, 관람시설 개선 및 문화행사 운영 등 고궁의 관람서비스 제공과 관람객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원이며,

입장료 수입의 10%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제2항⁴⁾에 따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납부되어 국가유산 보존·보수·복원, 매장 유산의 발굴,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등에 사용됨.

3)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2%, 2022년 17.4%, 2040년 34.3%, 2072년 47.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 12.) 되는 등, 향후 고령화로 인한 무료관람인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4)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고궁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의 감면에 있어서는 해당 정책이 국민의 문화 향유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와 재정적 영향이 균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⁵⁾.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혈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혈액관리법」 제4조의8에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개정안의 내용보다 더 폭넓은 범위로 헌혈자 예우를 위한 증진 사업을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산청)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위한 고궁 입장료 감면 사항은 공감하나, 상훈을 추천 받은 자와 수여 받은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추천만으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한적십자사) 여러 지자체들이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를 통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을 ‘감면 요건을 갖춘 다회 헌혈자’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

5) 수혜적 정책은 침익적·규제적 정책에 비하여 제도의 중단·폐지를 통해 혜택의 지급을 제도 시행 전으로 되돌리기가 어려운 경직적·경로의존적인 면이 있음.

【참고 1】	지방자치단체 헌혈자 예우 및 지원 주요 사례 (2025. 2. 기준)
---------------	---

구분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 허가 - 헌혈 독려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
부산광역시	- 헌혈 유공자 포상(부산시장, 연 15점) - 다회 헌혈자(100회 이상) 추가 인센티브 지급(부산혈액원 연계)
대구광역시	- 시·구·군 주관 단체헌혈을 통한 헌혈 증진(분기별 1회) - 헌혈장려 홍보를 통한 헌혈 환경 조성 및 참여 독려(라디오 홍보, 혈액수급 위기단계 보도자료 배포, 시정홍보 전광판, 시내버시 승강장, 도시철도 역사 전광판) - 헌혈 유공자 포상 : 4점(훈격 : 대구광역시장) - 대구·경북혈액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급 * 3회 이상 전혈 유지, 혈소판 12회 이상 1만원. '25년 인천시 관내 대학생 단체 헌혈버스 참여자(전혈) 1만원 등 - 다회 헌혈자 및 단체헌혈 관계자, 기관 등 헌혈증진에 기여한 인천시민 및 단체 유공자 표창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공가 허가 및 상시학습(4시간) 인정
광주광역시	- 다회헌혈자 2년간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 감면 * 감면증 발급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10회 이상 헌혈자 - 시 운영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시 운영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 시 운영 문화시설 이용료 20% 감면 - 공직자 단체헌혈 참가 공무원 대상 공가 허가
대전광역시	- 혈액수급위기단계에서 일정 기간 헌혈한 헌혈자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 - 관내에서 헌혈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회사랑상품권 지급 - 헌혈에 참여하는 공무원 대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1일) 허가
울산광역시	- 혈액수급 비상시기에 일정기간 헌혈한 헌혈자에 대하여 1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 헌혈문화 확산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헌혈 유공자 표창패 수여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공가 허가
세종특별자치시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공가 허가, 상시학습 인정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시민 대상 봉사 시간 부여 - 헌혈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
경기도	- 6.14. 헌혈자의 날 프로모션 진행, 헌혈기념품 구매 및 배포 - 다회헌혈자 및 헌혈추진협의회 대상 헌혈문화 이벤트 행사 실시 - 헌혈 증진 홍보사업, 홍보물 제작 등
강원특별자치도	- 도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급 - 헌혈권장 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
충청북도	- 도청 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단체헌혈 지원 - 헌혈 유공자 발굴 포상(도지사 표창) - 헌혈 장려 홍보 물품 제작, 전광판·홈페이지 등 헌혈 홍보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게 공가 4시간 이상 허가, 상시학습 4시간 인정
충청남도	- 헌혈증진 유공 개인 및 단체 도지사 표창 - 헌혈권장 및 홍보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 도비 지원 - 연 6회 대한적십자사의 대전·세종·충남혈액원 헌혈버스 지원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상시학습 2시간 인정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주관 상시학습(사회복지교육) 4시간 인정 - 헌혈에 참여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허가 -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전라남도	- 도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감면 - 헌혈 1회당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1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지급
경상북도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게 공가, 상시 학습 인정 - 헌혈 참가 시 기념품 지급 - 헌혈 유공자에 대해 표창
경상남도	- 헌혈자의 날 유공 도지사 표창 수여 - 공무원 대상 헌혈 시 공가 사용 및 상시 학습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 수혈용 헌혈자에게 1회당 5천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지자체-혈액원 연계) -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 시 상시학습(4시간) 인정 - 헌혈증(2년 이내) 소유자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구분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북구	- 연 3회 이상 헌혈자 또는 누적 헌혈 횟수 100회이상 헌혈자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 연 3회 이상 : 1년 감면 - 누적 헌혈 횟수 100회 이상 : 기간 제한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관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해당연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1.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단,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춘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및 1시간 초과분 감면 3. 헌혈자에게 1회당 5천원 지역상품권 지급 - 헌혈권장사업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음
	원주시	-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포상 -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에 수혈용 헌혈자에게 기념품, 지역상품권 등 지원 - 헌혈자에 대해 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음
	태백시	-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 - 당해연도 헌혈자에 따른 보건소 독감 무료접종 - 당해연도 태백에서 헌혈한 생애첫 헌혈자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지원(1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헌혈자에 대해 1회당 1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예산의 범위 내) - 헌혈자 대상 보건소 진료비 면제(1년간 전액) - 헌혈자 대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감면(1년간 50%)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공무원 대상 헌혈에 직접 필요한 시간 만큼 공가 허가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공무원 대상 특별휴가 허가(헌혈일로부터 1개월이내)
전라남도	목포시	- 1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온누리 또는 목포사랑) 지급 -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연간 3회이상 헌혈(전혈,혈소판 성분헌혈) 또는 12회 이상 헌혈(혈장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의 포상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 허가
	무안군	- 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영광군	- 영광군(보건소사업)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1회당 3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및 기념품 제공 - 헌혈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포상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 허가
경상북도	안동시	- 안동시민에 한하여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진료비 감면 - 독감예방접종 1회 무료 시행 - 안동시민에 한하여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안동사랑 상품권 지급 - 안동시민에 한하여 헌혈 당일 안동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공가 허가, 상시학습 4시간 인정
	구미시	- 독감예방접종을 헌혈 한 날부터 1년 내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 - 단체헌혈 참여 시 소정의 기념품 지급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공가 허가
	문경시	- 문경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자(전혈)에게 1회당 1만원 상당 문경사랑상품권 지급 및 보건소 무료 스케일링 지원
	칠곡군	- 헌혈한 헌혈자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 허가 -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 대상 상시학습 4시간 인정
	예천군	- 예천군 내에 설치된 헌혈 장소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 지급 -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1회 무료 시행(주민등록상 예천군 주소에 한함) - 헌혈에 참여하는 공무원 대상 상시학습 및 공가 허가
	봉화군	- 헌혈자를 대상으로 홍보물품 및 소정의 기념품(커피쿠폰) 지급 - 헌혈 참여시 회복을 위해 공무원 대상 공가처리 - 헌혈 참여시 자원봉사시간 및 상시학습 인정 - 봉화군 군민 대상 보건소 진료비 면제(1년이내)

주: 지자체 헌혈자 예우 및 지원의 주요 사례 자료로,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 중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 2】	고궁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
---------------	----------------------------

감면대상자	감면율 (일반관람요금에 대한 백분율)
국민 및 그 수행자	100분의 100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00분의 100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100분의 100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100분의 10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0분의 100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 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한복을 착용한 자	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100분의 10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100분의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100분의 10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100분의 10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100분의 10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10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100분의 100
「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광객을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100분의 100
「효행 장려 및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100분의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100분의 100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개별법령에서 정한 감면율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100분의 100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100분의 100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100분의 100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신부와 보호자 1인	100분의 100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100분의 50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100분의 100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100분의 100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100분의 100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100분의 100

자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훈령) [별표 1]